P-72-2011

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이영순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1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NFPA 1123, "Code for fireworks display", 2000 Ed., 2000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-72-2011

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꽃불안전공연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-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에 대한 꽃불 발사시설의 설치, 크 취급 및 운영에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1) 꽃불의 제조, 운송, 저장과 꽃불 및 그 사용시설의 시험(Test)
- 2) 일반대중의 꽃불 놀이
- 3) 군사용 꽃불의 운송, 취급 및 사용
- 4) 철도 신호내관, 붉은 섬광신호, 항공술, 해군 조명탄, 연기신호 등과 같은 산업용 꽃불 제조장치나 꽃불의 운송, 취급 및 사용
- 5) 꽃불의 행위예술에 사용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승인된 (Approved)"이란 관할기관이 꽃불의 설치나 발사 및 공연 등을 허용하는 사항을 말한다.
 - (나) "보조자 (Assistant)"란 옥외 꽃불공연을 실시하는 운영자의 지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, 모르타르에 꽃불의 장전, 공중 파열탄의 폭발위치 관측, 준비상자관리, 발사현장 설치와 청소, 불꽃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(다) "관할기관 (Authority having jurisdiction)"이란 장비, 설치 및 절차를 승인하는 임무를 맡은 기구, 부서 또는 개인을 말한다.
 - (라) "연발발사 (Barrage)"란 공중불꽃의 빠른 연쇄점화를 말한다.
 - (마) "흑색도화선 (Black match)"이란 흑색화약으로 만든 꽃불을 점화하는데 사용되

P-72-2011

는 화약이 충전된 도선을 말한다.

- (바) "분열 (Break)"이란 꽃불이 발사될 때 시각효과 또는 소음을 발생하도록 공중에서 파열되는 현상을 말하며, 공중 파열탄은 단일분열(한번 발 파열) 또는 다중분열(두번 이상 파열)을 일으킬 수 있다.
- (사) "사슬식신관 (Chain fusing)"이란 한 번의 점화로 연쇄적으로 점화하도록 신관 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현상을 말하며, 최후발사와 연속발사는 대표적으로 사슬식 신관을 사용한다.
- (아) "발사현장 (Discharge site)"이란 옥외 꽃불공연용 특수 불꽃장치나 모르타르의 인근지역을 말한다.
- (자) "전기도화선 (Electric match)"이란 소량의 열감응 불꽃 콤포지션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높은 저항소자로 단자처리 한 전선으로 구성한 장치를 말한다.
- (차) "전기발사유닛 (Electrical firing unit)"이란 전기도화선을 점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류원을 말한다.
- (카) "낙하지역 (Fallout area)"이란 공중파열탄을 발사할 때 파열탄이 파열한 후 생성되는 불안전 파편이나 불발 공중파열탄이 떨어지는 영역을 말하며, 이 지역은 바람과 모르타르의 배치각도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공중파열 불발탄이 대지에 떨어지는 위치이기도 하다.
- (타) "최후발사 (Finale)"란 전형적으로 꽃불공연 최후에 빠르게 연쇄적으로 발사하는 공중 꽃불공연을 말한다.
- (파) "꽃불 (Fireworks)"이란 연소, 폭연 또는 폭광에 의해 시각적 또는 청각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상의 화약류 중 화공품의 하나를 말한다.
- (하) "특수꽃불 (Special fireworks)"이란 연소, 폭연 또는 폭굉에 의해 주로 시각적 또는 청각적 효과를 발생하도록 설계된 대형 불꽃장치를 말한다.
- (거) "꽃불공연 (Fireworks display)"이란 의전 또는 오락이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꽃불의 옥외공연을 말한다.
- (너) "섬광화약 (Flash powder)"이란 폭죽과 의전폭죽에 사용할 목적인 폭발 콤포지션을 말하며, 이것은 점화 시 청각적인 폭음과 섬광을 발생하는 화약류로, 대표적인 섬광화약에는 염소산칼륨 또는 과염소산칼륨, 황이나 황화안티몬, 알루미

P-72-2011

늄 분말을 포함한다.

- (더) "신관 (Fuse)"이란 옥외 꽃불공연에서 꽃불을 점화하기 위한 점화장치를 말한다.
- (러) "양력장약 (Life charge)"이란 점화 시 파열탄을 공중으로 추진하는 공중 파열 탄에 있는 화약류(콤포지션)를 말하며, 보통 순간도화선 신관에 의해 점화되는 흑색화약장약으로 구성한다.
- (머) "수동점화 (Manual ignition)"란 신관이나 꽃불점화장치와 같은 휴대용 점화원을 이용하여 불꽃장치를 점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.
- (버) "감시자 (Monitor)"란 관중을 관람지역에 유지하고, 발사현장과 낙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공연주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(서) "모르타르 (Mortar)"란 공중 파열탄을 공중으로 발사하는 튜브형 발사몸체를 말한다.
- (어) "모르타르 걸이 (Mortar rack)"란 모르타르를 담고 있는 강한 프레임으로 이는 주로 연발발사, 최후발사 등 전기로 점화하는 공연에 사용한다.
- (저) "모르타르 구조물 (Mortar trough)"이란 모르타르를 꽃불공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나 유사한 물질로 충전한 지상 구조물을 말한다.
- (처) "비점화전류 (No-fire current)"란 도화선에 의한 점화를 사용하지 않고, 실내온 도에서 5초 동안 전기도화선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한다.
- (커) "운영자 (Operatior)"란 옥외 꽃불공연의 안전, 설치 및 발사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(터) "꽃불 점화장치 (Portfier)"란 옥외 꽃불공연에서 꽃불의 점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천천히 연소하는 꽃불 콤포지션이 있는 긴 튜브를 말한다.
- (퍼) "의전폭죽 (Salute)"이란 큰 폭음을 발생하도록 설계한 특수 불꽃장치를 말한다.
- (허) "공중 파열탄 (Shell 혹은 Aerial)"이란 보통 꽃불 콤포지션, 긴 신관 또는 전기 도화전선, 흑색화약양력장약이 있는 실린더형이나 구형 카트리지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

P-72-2011

관한 규칙 | 그리고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특수꽃불 공중파열탄 공연 안전

4.1 특수꽃불 공중파열탄의 구조

- (1) 파열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경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(예로, 76 mm 파열탄은 76 mm 모르타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).
- (2) 공중 파열탄은 해당 크기의 모르타르에 쉽게 설치되고, 양력장약과 내부지연신관 이 동작 전에 안전한 높이로 파열탄을 추진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- (3) 파열탄에는 파열탄의 형태, 크기 및 제조자나 판매자 이름을 표시하고,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양력장약을 점화하기 위해 순관도화선 신관을 사용하는 공중 파열탄의 신관은 파열탄에 알맞게 삽입된 후에 신관이 모르타르로부터 152 mm이상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. 다만, 파열탄을 전기적으로 발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5) 공중탄을 점화하는 사람의 안전한 후퇴가 가능하도록 파열탄 신관 끝부분의 점화 와 파열탄의 발사사이의 시간지연은 3초 이상 6초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전기적 으로 점화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6) 신관의 노출된 끝부분에는 안전캡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안전캡의 색깔은 신관과 달라야 하며, 안전캡을 설치할 때에는 신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기적으로 발사하는 꽃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7) 단일분열 의전폭죽 파열탄은 직경 76 mm 또는 길이 76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의전폭죽에서 의전폭죽 화약의 최대량은 71 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8) 다중내부 의전폭죽이 있고, 직경 76 mm를 초과하는 단일분열 파열탄과 직경 76 mm를 초과하는 다중분열 파열탄에 대해 파열탄 하나당 의전폭죽 화약의 최대량은 142 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4.2 공중 파열탄의 저장

P-72-2011

- (1) 모든 꽃불은 공연지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저장 및 운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꽃불은 공연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관리자 없이 방치하거나 물기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3) 모든 파열탄은 공연현장에 도착 시 운영자가 점검하여야 한다. 이때, 분해, 누설 또는 파손한 신관이 있거나 물기흔적이 있는 파열탄은 분리하여 발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공연 후에 이러한 파열탄은 공급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급자의 지침에따라 파괴하여야 한다.
- (4) 공연현장에 도착 시 모든 파열탄은 크기와 의전폭죽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야 하며, 모르타르에 장전할 때까지 파열탄은 특수꽃불의 운송에 관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준비상자나 골판지 같은 덮개가 있는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.
- (5) 옥외 꽃불공연을 실행하는 동안 준비상자는 모르타르로부터 역풍으로 7.5 m 이상 거리에 있어야 하며, 공연을 실시하는 동안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준비상자는 발사현장으로부터 다시 역풍으로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관할기관이 인정하거나 전기적으로 점화하는 공연과 같이 공연하는 동안 저장할 필요가 있는 파열탄이 없을 때 준비상자는 필요가 없다.

4.3 모르타르의 설치

- (1) 배치하기 전에 모르타르는 움푹 들어간 곳, 구부러진 끝부분, 손상된 내부, 손상된 플러그와 같은 결함을 세심하게 검사하여야 하고, 결함이 발견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2) 모르타르는 파열탄이 관중으로부터 먼 쪽과 낙하지역위로 발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,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르타르는 관중관람지역을 향하는 각도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모르타르는 최소한 모르타르 길이의 2/3 ~ 3/4의 깊이로 대지, 지상 드럼 또는 홈통에 매설하여야 한다. 다만, 직경 152 mm를 초과하지 않는 단일분열 파열탄 발사의 경우에는 견고하게 배치된 모르타르 걸이를 사용할 수 있다.
 - (가) 습한 대지에 배치하여 종이 모르타르를 손상할 수 있는 조건에서 종이 모르타 르는 습한 대지에 배치하기 전에 방습부대 안에 두어야 하며, 지하수가 모르타

P-72-2011

르로 스며들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지에 배치하기 전에 방수부대 안에 두어야 하고, 모르타르에 물이 고일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모르타르의 입구에 내 습성 덮개를 씌워야 한다.

- (나) 연성지면에서 발사 시 모르타르가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에 는 모르타르 밑에 충분한 추가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.
- (다) 대지, 홈통 및 드럼에 매설된 모르타르는 인접 모르타르에서 최소한 모르타르 직경만큼의 거리를 이격하여야 하고, 홈통 또는 드럼에 있는 모르타르는 발사 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홈통과 드럼을 사용하는 경우 모래나 부드러운 흙으로 채워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돌이나 다른 위험성이 있는 파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연쇄발사와 같이 4개 이상 파열탄이 신관체인에 의하여 발사될 때에는 모르타르에서 파열탄의 폭발할 때 인근 모르타르의 위치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위한 추가 수단이 필요하다. 즉, 매설 모르타르에 대해서는 모르타르를 최소직경의 4배 이상을 이격하여 모르타르를 설치하여야 하고, 모르타르 걸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에서 파열탄의 폭발에 성공적으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모르타르 걸이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바) 모르타르를 공연 중에 재장전할 때 여러 가지 크기의 모르타르가 서로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, 동일크기 모르타르는 그룹으로 놓아야 하고, 그룹은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.
- (4) 꽃불공연을 하는 동안 사람이 모르타르 가까이에 있을 때 모래자루나 다른 적당한 방호장치를 모르타르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방호장치의 높이는 모르타르 의 입구높이 정도로 한다.
- (5) 첫 번째 파열탄을 장전하기 전에 물이나 파편이 모르타르의 바닥에 들어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르타르를 검사해야 한다.
- (6) 모르타르는 공중 파열탄을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 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- (가) 주조철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- (나) 금속모르타르는 이음매가 있거나 없어야 하지만, 이음매가 있는 모르타르는 사람이 모르타르선을 직면할 때 이음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향하도록 설치

P-72-2011

하여야 한다.

- (다) 모르타르는 공중 파열탄이 안전한 높이로 발사되도록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.
- (7) 필요 시 모르타르 및 그 주변의 파편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도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8) 모르타르의 내경을 표시하는 숫자는 명백하게 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든 모르 타르의 상부에 표시하여야 한다.

4.4 전기발사유닛

- (1) 옥외 꽃불공연을 전기적으로 발사할 때 사용하기 위한 전기발사유닛은 다음의 설계지침을 따라야 한다.
 - (가) 어떠한 지점에서도 전기발사유닛과 관련된 전선과 지면에 접한 금속물질 사이 에 전기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
 - (나) 전기적인 발사유닛이 교류 동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면 일부 형태의 선절연을 하여야 한다.
 - (다) 전기적인 발사유닛에는 열쇠로 동작하는 스위치나 허가받지 않거나 무의식적인 발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전기발사유닛이 크기가 매우 작고, 실제 짧은 발사기간 동안 전기도화선으로 연결하는 전선에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① 수동기동 전기발사유닛은 전기도화선에 전류를 인가하기 위해 최소한 두 개의 명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예를 들면, 2개의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류가 통하기 위해서는 2개의 스위치가 모두 동작해야 한다.
 - ② 컴퓨터기동 자동 연쇄형 전기발사유닛은 스위치를 해제하는 순간 모든 발사를 중단하도록 "비상제어스위치" 형태의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.
 - (라) 전기발사유닛에 시험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면 유닛은 시험전류를 0.05 A 또는 전기도화선 비점화전류의 20 % 중 작은 값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 - ①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전위를 운반하는 최대전류가 측정 및 발견되지 않는 한 전압저항계와 같은 다중시험기는 시험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- ② 발사회로를 시험할 때 어떠한 사람도 전기적인 발사유닛에 부착된 꽃불의 아

P-72-2011

주 가까운 곳에 없어야 한다.

5. 현장 선정

5.1 공중파열탄 발사 시 안전거리

(1) <표 1>은 관할기관이 꽃불공연 현장을 승인할 때 기준이 되는 모르타르로부터 관중까지의 안전(이격)거리를 규정한 지침이다. 다만, 추가 안전예방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특별히 좋은 조건이 존재하여 관할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권장 이격거리를 감소할 수 있고, 비정상이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은 권장 이격거리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.

<표 1> 옥외 꽃불공연 현장의 안전을 위한 최소 안전(이격)거리(모르타르와 관중 간 거리)

모르타르 규격		발사지점으로부터 의 최소안전거리		수직 모르타르		30도 모르타르		특수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거리	
in	mm	ft	m	ft	m	ft	m	ft	m
< 3	< 76	280	85	140	43	95	29	280	85
3	76	420	128	20	64	140	43	420	128
4	102	560	171	280	85	190	58	560	171
5	127	700	213	350	107	230	70	700	213
6	152	840	256	420	128	280	85	840	256
7	178	980	299	490	149	320	98	980	299
8	203	1,120	341	560	171	370	113	1,120	341
10	254	1,400	427	700	213	460	140	1,400	427
12	305	1,680	512	840	256	560	171	1,680	512

- (2) 관할기관이 공연을 승인할 때에는 발사현장 상황, 관중의 관람지역, 주차지역 및 낙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검사하고, 승인하여야 한다.
- (3) 옥외 꽃불공연 현장은 <표 1>에 표시된 것 외에 최소한 발사할 가장 큰 공중파열 탄의 모르타르 내경의 250 mm 당 22 m 반경을 가져야 한다. 이때, 관중 및 주거지 역, 관중의 주차지역도 공연현장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.

P-72-2011

- (가) 의료시설과 유치장 교정시설로부터 거리는 최소한 <표 1>에 규정된 거리의 두 배이어야 한다.
- (나) 인화성, 폭발성 및 독성 위험이 있는 물질의 대량 저장지역으로부터 거리는 <표 1>에서 요구하는 값의 두 배이어야 한다.

5.2 발사현장(Discharge Site)

- (1) 공중파열탄의 발사지역은 파열탄의 궤도 내 7.7 m 안에는 아무런 물체도 접근하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.
- (2) 지상 공연지역은 관중의 관람지역과 주차지역으로부터 최소 23 m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. 다만, 보다 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상 공연지역(강력한 조정기가 있는 대형 회전불꽃, 통형 불꽃장치, 대형 의전폭죽을 이용하는 품목)의 최소 이격거리는 38.5 m로 증가하여야 한다.
- (3) 모르타르가 수직으로 위치할 때 모르타르는 대략 공연현장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공연 중 모르타르에 연속장전을 위하여 공중 파열탄을 발사현장에 저장하려고 할 때 모르타르는 주 관람지역을 향하여 공연 현장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1/6 이상 1/3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.
 - (나) 모르타르는 어떠한 불발 파열탄도 공연현장의 안전거리 내로 낙하하도록 하고, 가급적이면 관중의 반대방향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꽃불은 텐트나 오두막으로부터 31 m 거리이내에서 발사하지 않아야 한다.

5.3 낙하지역(Fallout Area)

- (1) 낙하지역은 개방지역이어야 한다.
- (2) 관중, 차량 및 인화성 물질은 공연하는 동안 낙하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.

6. 꽃불공연의 수행

6.1 일반 안전기준

P-72-2011

- (1) 꽃불공연의 주최자는 꽃불공연을 실시할 때 있을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방화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때, 주최자는 필요한 방화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기관과 협의해야 한다.
- (2) 꽃불공연의 주최자는 임무가 대중통제를 실시해야하는 감시자를 공연지역 주변에 배치해야 한다.
 - (가) 관중이나 기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사현장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발사현장 주변에 배치해야 하고, 발사현장은 공연 중과 공연 후 발사현장을 점검할 때까지 제한하여야 한다. 이때, 대중통제는 울타리와 로프장벽을 사용하여실시하도록 한다.
 - (나) 꽃불 공연기간 동안 꽃불재료가 있는 현장에 경호가 없는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3) 운영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.
 - (가) 운영자는 꽃불공연의 안전한 실행을 위해서 충분한 수의 보조자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.
 - (나)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운영자와 필요한 보조자만이 발사지역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.
 - (다) 운영자는 모든 보조자가 할당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완전히 훈련되고, 안전위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.
- (4) 관할기관이나 운영자의 의견으로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악조건이 존재할 때에는 그 조건이 수정될 때까지 꽃불공연을 연기하여야 한다.
 - (가) 관할기관이나 운영자가 대중통제의 부족으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황이 고쳐질 때까지 꽃불공연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 - (나) 관할기관이나 운영자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강한 바람, 강수 또는 다른 악천후 상황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날씨가 공연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꽃불공연을 연기하여야 한다.
- (5) 운영자와 보조자는 인공조명용으로 섬광등이나 전등만을 사용해야 한다.
- (6) 꽃불이나 다른 꽃불재료가 있는 지역의 15.2 m 이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.
- (7) 악천후 시 꽃불공연에 사용하는 모든 꽃불 공연재료를 방호할 수단을 취해야 한

P-72-2011

다. 특히, 습기로 손상을 입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(8) 판단, 움직임 및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코올, 환각제 또는 마약의 영향이 있는 사람을 발사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.

6.2 자격

6.2.1 운영자의 자격

- (1) 모든 운영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, 모든 관련법에 따라 관할기관이 허가하고 승인하여야 한다.
- (2) 운영자 자격응시자는 관할기관이 주관하는 꽃불의 발사와 관련된 법, 규정, 안전실행기준의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숙련도를 증명해야 한다.

6.2.2 보조자

모든 보조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

6.2.3 허가사항

- (1) 꽃불 공연회사, 조직 및 개인집단은 꽃불공연을 하기 전에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(2) 허가절차의 일부로, 꽃불 공연회사, 조직 및 개인집단은 보험의 증거나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경제적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.

6.3 파열탄의 발사

- (1) 파열탄은 신관이 아니라 동체로만 저장지역으로부터 발사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.
- (2) 파열탄은 공연 전에 모르타르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모르타르에 장전할 때 파열탄은 모르타르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리고 설치된 경우 신관이나 하강코드로 잡아야 한다.
- (4) 항상 파열탄을 장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체 일부를 모르타르의 입구위로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.

P-72-2011

- (5) 파열탄을 장전하는 사람은 파열탄이 모르타르의 바닥에 적절하게 고정한 것을 합리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열탄은 너무 작아서 수용할 수 없는 모르타르에 억지로 넣지 않아야 한다.
- (7) 모르타르에 적절하지 않는 파열탄은 발사하지 않아야 한다.
- (8) 파열탄은 신관의 끝을 내풍성냥, 토오치, 꽃불점화장치 또는 유사한 장치로 점화하여야 한다.
- (9) 운영자는 상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모르타르 위로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, 신관을 점화하자마자 운영자는 모르타르 지역에서 후퇴해야 한다.
- (10) 신관을 보호하는 안전캡은 파열탄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신관 점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.
- (11) 첫 번째 발사 파열탄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파열탄이 낙하지역 위에 작용하고 위험한 파편이나 파열 불발탄이 낙하지역으로 떨어지도록 궤도를 결정해야 한다.
- (12) 옥외 꽃불공연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을 중지하고, 모르타르는 각도를 재조정하거나, 재배치하여야 한다.
- (13) 모르타르에서 점화를 실패한 파열탄의 경우 모르타르에 불발 파열탄의 존재를 표시해야 하고, 불발 파열탄이 남아있는 한 모르타르에 재장전하거나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14) 공연직후나 발사 시 15분 후에 파열탄이 발사되지 않았다면 모르타르를 조심스럽 게 물에 잠기도록 하고, 파열탄을 비우기 전에 최소 5분 동안 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5) 파열탄이 모르타르에서 발사하지 않을 때를 감지하는 것은 공중 파열탄을 점화하는 사람의 책임이고, 그 사람은 그 지역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, 즉시 모르타르에 불발공중파열탄의 존재를 표시해야 한다.
- (16) 신관체인 공중 파열탄의 수동 재점화는 적절하게 설치한 점화지점에서만 시도하여야 한다.
- (17) 공연 이후에 발사요원은 폭발하지 않은 공중 파열탄을 확인하기 위해 낙하지역을 점검해야 하고, 점검은 현장에 대중이 접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

P-72-2011

사 시 발견한 모든 파열탄은 발사한지 최소한 15분이 지나기까지 손을 대지 않아야 하고, 그 후에 꽃불은 물을 살포하여야 하며, 플라스틱 통이나 섬유판상자에넣기 전에 최소한 5분 더 있어야 한다.

(18) 밤에 꽃불공연을 하고, 현장을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운영자는 전체 현장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재조사해야 한다.

6.4 지상 공연기구

- (1) 모든 지상기구는 공중 꽃불공연 발사지역의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. 다만, 지상공연 기구를 전기적으로 발사할 때에는 낙하지역에 위치할 수 있고, 공중 파열탄을 미 리 장전하였을 때 지상 공연기구는 발사지역에 위치할 수 있다.
- (2) 지상 공연기구아래 건초나 가연성 물질은 화재위험에 충분한 양이면 공연 전에 물로 적셔야 한다.
- (3) 지상 공연기구용 기둥은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, 꽃불기구의 동작 동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보강하여야 한다.
- (4) 모든 지상 공연기구는 공급자의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며, 필요한 부속품도 공급 하여야 한다.